

Vol. 141 (June 2019)

인터넷 법제동향

Laws and Policy Trends of the Internet



CONTENTS

국내 입법 동향

< 공포된 법령 >	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9. 6. 11.)	
< 국회 제출 법률안 >	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대표발의, 2019. 6. 12.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2019. 6. 13.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대표발의, 2019. 6. 20. 제안)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2019. 6. 11. 제안)	
•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정세균의원 대표발의, 2019. 6. 4. 제안)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9. 6. 12. 제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2019. 6. 21. 제안)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제안)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2019. 6. 10. 제안)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2019. 6. 12. 제안)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	12
• 미국 하원, 국토안보부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팀 창설 법안 통과 (2019. 6. 10.)	
< EU >	15
• 유럽 네트워크정보보호원(ENISA), 산업 4.0 분야의 사이버보안 권고안 발표 (2019. 5. 20.)	
• 유럽 이사회, 2020년 이후의 EU 디지털 경쟁력 강화 정책 결의안 채택 (2019. 6. 7.)	
< 영국 >	21
• 영국 인공지능사무국(OAI), 인공지능의 윤리와 안전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구현 가이드 발표 (2019. 6. 10.)	
< 일본 >	24
• 일본 총무성, 디지털화 정책의 고도화를 위한 ICT 글로벌 전략 공표 (2019. 5. 31.)	
• 일본 내각,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2019. 6. 14.)	
< 캐나다 >	30
• 캐나다 사이버보안센터(CCCS), 사이버보안 교육과정 가이드 초안 발표 및 의견수렴 실시 (2019. 5. 29.)	

기고

•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 (김창화 교수)	33
• 일본의 핀테크 관련 입법동향 (곽관훈 교수)	40

<공포된 법령>		
법령명	공포일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 6.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해야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와 자격을 규정
<국회 제출 법률안>		
법령명	대표발의 의원 (발의날짜)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2019. 6.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을 금지하는 불법정보에 성매매 알선 정보 또는 성을 파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을 전시하는 내용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2019. 6.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금지 장소에 개인 주거공간을 추가하고 드론을 영상 정보처리 기기의 범위에 포함, 국회제출용 연차보고서에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함
	백승주의원 (2019. 6.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처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이력을 관리하고 개인정보 파기현황을 매 분기 조사·보고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2019. 6.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망에서 매입가격을 초과한 공연 입장권·관람권 판매·알선을 규제하고, 현장 판매의무를 명시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정세균의원 (2019. 6.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일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을 요청할 수 있음 복표 발매 및 사행행위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2019. 6.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의 정의 규정 신설 및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2019. 6.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망을 통한 상품 판매 목적의 공중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 규정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2019. 6.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수집되는 부수 정보는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고 위치정보 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변경 사업의 폐지·정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2019. 6.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정보파일을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표준화하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 (2019. 6.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상화폐를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포함하고 “금융거래”의 정의에 금융자산과의 교환 등을 포함 가상화폐취급업자가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9. 6. 11., 시행 2019. 6. 13.)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금액을 최저 5천만원, 최고 10억원으로 정하며,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경우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겸직이 금지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신고 대상자의 범위 등(제36조의6제3항 및 제4항)
 - 겸직이 금지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등으로 정함
 - 겸직이 금지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을 정보보호 분야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대표발의, 2019. 6. 1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음란정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런데 이른바 '성매매후기사이트' 등을 통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 관련 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불법정보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매매 관련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2019. 6. 1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그런데 그 규율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로 한정되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주거공간은 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한편 현재 드론 카메라 기술은 나날이 발전되어 경찰의 치안 유지, 재난 지역의 실종자 수색 및 산불 감시, 미디어 업계의 항공 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드론 조종자의 임의 조작 및 고화질 촬영 등에 의해 드론이 날아다니는 '몰카'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주요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금지하는 장소에 개인의 주거공간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25조의2, 제67조 제2항제2호의2 신설 및 제25조제2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대표발의, 2019. 6. 2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이유

-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전반의 의식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주요내용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이력관리를 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확보조치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파기 현황을 매 분기 조사를 하거나 보고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31조제3항 단서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2019. 6. 1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이유

- 현재 현장에서 판매되는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경범죄로 규율되어 단속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해 매매되는 암표 거래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고령자 등은 이러한 인터넷을 통해 매매되는 암표 거래 등으로 인해 공연 표가 조기 매진됨에 따라 해당 공연에 대한 구매 기회를 얻기 힘든 실정임

▶ 주요내용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 입장권·관람권 등(이하 “공연 입장권등”이라 함)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연 입장권등의 현장 판매 의무 비율을 명시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3조제2항제1호·제1호의2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정세균의원 대표발의, 2019. 6. 4.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이유

-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이 전체 불법사행산업 규모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온라인의 익명성으로 인하여 청소년이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이용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형법」이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과 같은 일반법으로는 이러한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방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불법온라인사행산업으로 얻게 되는 수익에 비하여 처벌이 가벼워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이 계속하여 성행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근절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사행행위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강화된 벌칙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 ※ 이 법률안은 정세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9. 6. 1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최근 소프트웨어에 대한 해킹 등 침해행위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러한 침해행위의 대다수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출시된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안 및 침입차단 프로그램으로는 이를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소프트웨어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서 '소프트웨어개발보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법에는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의 정의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을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현행법에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을 진흥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6호의2 및 제15조의2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2019. 6. 21.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이를 악용하여 이동통신사들이 '5G 상품'의 판매 홍보를 위하여 무료라는 이유로 등급분류가 되지 않은 선정성이 과도한 비디오물을 무차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주요내용

-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이더라도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판촉을 위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을 공급하려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2호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019. 6. 2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현행법은 위치정보의 정의가 매우 광범위하여 위치 정보 수집 목적 없이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까지 위치정보의 개념에 포함되어 사업자 등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위치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법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 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치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된 것으로 하여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를 위치정보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1호)
-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용 하던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적 시설과 인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5조)
-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의 폐지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등에게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3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2019. 6. 1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이유

- 현재 전자정부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기구인 전자정부추진위원회는 2016년 4월부터 행정안전부 훈령인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위상을 높이고 그 활동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둘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각 기관별로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별로 동일한 행정정보를 중복 저장하고 운영함에 따라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이용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기에 다수의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행정정보 중 적합성과 통일성이 요구되는 행정정보는 별도로 지정하고 이를 다른 행정기관등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두고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전자정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국가기반정보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안 제5조의 4제1항 및 제4항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수의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행정정보 중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국가기반정보로 지정할 수 있되,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반정보 지정여부와 국가기반정보관리기관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 국가기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기반정보의 적합성을 유지하고 다른 행정기관 등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반정보의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행정정보파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표준화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51조의2제5항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2019. 6. 12.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 최근 분산원장 기술(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화폐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상화폐의 거래는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가상화폐가 탈세나 자금세탁, 범죄수익의 은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커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이 법의 대상인 금융회사 및 금융거래에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취급업자”를 포함하고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 법의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등”에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 가상화폐를 포함함
(안 제2조제1호하목 신설)
- “금융거래”의 정의에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가상화폐의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 업무를 위하여 가상화폐를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것 등을 포함함(안 제2조제2호 라목 신설)
-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된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5 신설)
-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미국 하원, 국토안보부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팀 창설 법안 통과 (2019. 6. 10.)

미국 하원은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사이버 공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에 사이버보안 사고 전담 대응팀(CIRT)¹⁾을 창설하는 법안²⁾을 가결 (2019. 6. 10.)

▶ 개요 및 경과

- 미국 하원에서 정부와 민간의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응하도록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팀을 전담 조직으로 국토안보부에 창설하는 법안을 가결함
 - 본 법안은 정부와 공공, 민간 부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안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전담 조직을 창설하고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이에 따라 2002년 국토안보법³⁾의 일부를 개정함
 - 해당 조직에는 민간 부문의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사이버보안 위협 탐지·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복구 지원 등의 임무를 부여
- 지난 2018년에 동일한 제명의 법안이 상원⁴⁾에서 통과되지 못한 바 있으나, 이번 법안은 최근에 더욱 증가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사이버보안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비 연방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제공의 내용을 추가한 것임

▶ 주요 내용

- **(조직 구성)** 이번 법안을 통해 창설되는 조직은 국토안보부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국(CISA)⁵⁾의 국가사이버보안·통신통합센터(NCCIC)⁶⁾내에서 운영되며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전문가로 구성됨

1) Cyber Incident Response Team

2) DHS Cyber Incident Response Teams Act of 2019 (H.R.1158)

3) Section 2209 of the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6 U.S.C. §148) 미국 연방 법전 제148조는 국토안보부의 정보보안 부문 조직 중 국가사이버보안·통신통합센터(NCCIC)의 정의 및 기능, 구성 및 업무 수행 원칙 등을 규정함.

4) DHS Cyber Incident Response Teams Act of 2018 (S.3309): 2018년 7월 상원에서 소개된 이후

5)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6) National Cybersecurity and Communications Integration Center: 2009년 설립되어 사이버보안 및 통신 정보 업무, 사이버보안 관련 상시 상황 인식·분석·사고 대응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국가 사이버보안 허브 역할을 수행함.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현행 국토안보부 내의 사이버보안 관련 조직은 공무원 및 공공부문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나, 이번에 설치되는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팀은 민간 부문의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포함
- **(임무)**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팀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 및 민간기관 등에서 적절한 요청⁷⁾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대응 및 지원업무를 수행
 -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 후 자산 소유자와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복구·복원을 지원
 - 사이버보안 위협과 관련된 활동을 탐지
 - 사이버보안 위협을 방지 및 보호하기 위한 완화 업무
 - 자산 소유자와 운영자에게 사이버보안 위협성을 낮추기 위한 전반적인 네트워크 및 제어 시스템 보안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 **(보고)** NCCIC는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팀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매년 의회⁸⁾에 제출해야 함
 - 운영에 대한 평가 시 사용되는 지표에 대한 정보
 -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 사이버보안 사고의 건수 및 사고 대응팀을 지원하는 기관 간 협력 사항
 - 사이버보안 사고 지원 시 투입된 자원과 인력 배치

▶ 시사점

- 미국은 사이버보안 업무의 통합·연계 조직으로 2009년에 국토안보부에 NCCIC를 설립하고 2017년에는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었던 비상 대응팀인 US-CERT와 ICS-CERT의 기능을 통합⁹⁾하였으며, 최근에는 사이버보안 사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증원 및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 동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향후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국가의 주요 IT 인프라가 손상되는 경우 관련된 공공 및 민간기관에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국가 사이버보안 사고에 대한 비상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

7) 사이버보안 사고에 대한 통보가 있으면 해당 조직은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예비 진단을 수행하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팀을 배치함.

8)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및 상원 국토안보정무위원회

9) 2017년에는 이전의 미국 컴퓨터 비상 대응 팀(United States Cyber Emergency Readiness Team, US-CERT)와 산업 제어 시스템 사이버 비상 대응 팀(Industrial Control Systems Cyber Emergency Readiness Team, ICS-CERT)가 독립적으로 수행한 조직 구조를 재정비하고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 중에 있음.

※ **Reference**

<https://www.congress.gov/116/bills/hr1158/BILLS-116hr1158pcs.pdf>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1158/all-info>

유럽 네트워크정보보호원(ENISA), 산업 4.0 분야의 사이버보안 권고안 발표 (2019. 5. 20.)

유럽 네트워크정보보호원(ENISA)은 산업 4.0(Industry 4.0)¹⁾ 정책 확대와 산업용 IoT 시스템의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을 위해 《산업 4.0 분야의 사이버보안 권고안》²⁾을 발표 (2019. 5. 20.)

▶ 개요 및 경과

- 유럽 네트워크정보보호원(ENISA)은 산업 4.0 정책 추진과 함께 최근 스마트 제조 및 산업용 IoT 기기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부문의 사이버보안 강화 및 혁신을 촉진하고자 《산업 4.0 분야의 사이버보안 권고안》을 발표
 - EU 전체의 산업계 사이버보안 강화 및 미래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융합보안 지식의 보급·확대, 경제·행정적 인센티브 강화, 사이버보안 표준 개발 강화, 안전한 공급망 관리 절차 마련 등 이슈 주제별 권고사항을 제시
- ENISA는 지난 2018년에 IoT 기술의 도입으로 촉발되는 산업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한 모범 사례를 수집·분석한 연구보고서³⁾를 발표한 바 있음

▶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본 권고안의 주요 적용 대상은 산업계의 보안 전문가와 운영자, 정부·공공기관, 표준화 그룹, 학계·연구단체임
- **(구성)** ▲인력 ▲절차 ▲기술 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7개의 권고사항을 제시
 - 인력: 융합보안 지식의 보급·확대, 경제·행정적 인센티브 제도 강화 등
 - 절차: 산업부문 사이버보안 표준 개발 강화, 안전한 공급망 관리 절차 마련 등
 - 기술: 사이버보안 상호 운용성 기준 설정, 적절한 기술적 조치 실행 등

1)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일 정부가 시작하여 EU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성장 전략으로,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등 ICT 시스템을 결합해 지능형 공장으로 진화하여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전체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산업정책임.

2) Industry 4.0 - Cybersecurity Challenges and Recommendations

3) ENISA, 2018, Good Practices for Security of IoT in the context of Smart Manufacturing

- (부문별 주요 내용) 상기한 각 부문별로 제시한 산업 4.0 분야의 사이버보안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음

< 산업 4.0 분야의 사이버보안 권고사항 >

구분	내용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합 보안 지식의 보급·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IT와 OT 보안⁴⁾의 개별적 추진으로 통합적 지식·기술의 확보가 어려움 - 권고사항: IT 및 OT 보안 전문가 간의 상호 지식의 교류를 장려하고, 융합 정보보안 교육훈련을 실시 • 산업부문 사이버보안의 경제·행정적 인센티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산업계에서 사업 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사이버보안을 고려하지 않음 - 권고사항: 최고 경영진과 사이버보안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직 구조 확립, 산업 4.0 관련 사이버보안 분야에 대한 재정적 지원 실행, 장기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제도 환경 보장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4.0부문 사이버보안 종사자의 책임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산업부문 사이버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음 - 권고사항: 책임에 대한 행위자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명시 하도록 법제도를 개선, 조달시장에서 사이버보안 요구사항 지정, 피해 영향 완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정책 도입 • 산업 4.0부문 사이버보안 표준 개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관련 표준의 단편화로 다양한 기술이 접목된 융합 시스템 추진이 어려움 - 권고사항: 가능한 전체 범위를 다루는 표준화 활동을 추진, 기존 표준에 대한 분석 및 새로운 요구사항에 따른 개선 실시, 표준화 활동 간 연계 계획 개발 • 안전한 공급망 관리 절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IoT, AI 등 새로운 기능 도입으로 재료·부품의 공급망이 더욱 복잡해짐 - 권고사항: 주기적으로 사이버보안 위험 평가를 실시하여 공급망 위험 요소 식별, 공인된 보안 표준 및 인증 체계를 준수하는 공급업체와 거래해야 함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보안 상호 운용성 기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상호 운용성 부족으로 다양한 기기 간의 상호 연결이 어려움 - 권고사항: 제품 생산 시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이버보안 공통 프레임워크를 활용 • 적절한 기술적 조치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기기 간의 연계 시 예상하지 못한 보안 취약점 발생 및 전용 도구 미비 - 권고사항: 산업부문 사이버보안 위험 평가를 고려한 아키텍처를 정의, 지능형 사이버 위협 대응 구현,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 업데이트 실시

4) 운영기술(Operational Technology) 보안: 기업의 물리적 장치, 프로세스 및 이벤트에 대한 직접적 모니터링과 제어를 통해 변화를 감지하거나 일으키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발전소나 대중교통 제어 등 산업제어시스템(Industry Control System, ICS)에서 주로 사용됨.

▶ 시사점

- 유럽은 산업 4.0 정책 추진으로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IoT, AI 등 신기술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권고안은 EU 전체 산업계의 사이버보안 강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특히 지난 6월 7일에 EU 관보에 게재된 《사이버보안법》⁵⁾에 따라 ENISA가 유럽 사이버보안 인증 프레임워크의 관리 감독 등을 주도하게 되었으므로, 향후 인증 체계 추진과 관련하여 산업부문의 사이버보안은 이번에 발표한 권고안의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

※ Reference

https://www.enisa.europa.eu/publications/industry-4-0-cybersecurity-challenges-and-recommendations/at_download/fullReport

<https://www.enisa.europa.eu/publications/industry-4-0-cybersecurity-challenges-and-recommendations>

<https://www.enisa.europa.eu/news/enisa-news/enisa-is-setting-the-ground-for-industry-4-0-cybersecurity>

5) Regulation (EU) 2019/8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ENISA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an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ybersecurity certific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6/2013 (Cybersecurity Act), 동 규정은 EU 관보에 공표된 날로부터 20일 이후에 발효됨.

유럽 이사회, 2020년 이후의 EU 디지털 경쟁력 강화 정책 결의안 채택 (2019. 6. 7.)

유럽 이사회는 2020년 이후의 EU 전역의 디지털 경제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EU 디지털 경쟁력 강화 정책 결의안》¹⁾을 채택 (2019. 5. 17.)

▶ 개요 및 경과

- 유럽 이사회는 2020년 이후 미래의 유럽 디지털 경제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그동안 논의된 다양한 의제를 종합하여 향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한 《EU 디지털 경쟁력 강화 정책 결의안》을 채택
 - 이번 결의안의 핵심 주제는 유럽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와 디지털 불균형의 해소, 5G 네트워크 통신 발전 등을 들 수 있음
 - 또한, 고도화되는 디지털 경제에서 사물인터넷, 양자정보통신, 블록체인, 지구관측 서비스 등 신기술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
- 유럽 이사회는 지난 2018년 11월에 유럽 콘텐츠 강화에 대한 결론²⁾을 도출하고, 2019년 3월에 개최한 비공식 장관회의³⁾에서 고도로 디지털화된 미래 유럽의 전망을 논의한 바 있음

▶ 주요 내용

- **(목적)** 디지털화는 유럽의 경쟁력과 응집력 확보, 경제발전 및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며 모든 유럽의 시민들이 디지털 경제를 통해 광범위한 혜택을 누리고, 아래와 같은 노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함
 - EU 전체의 디지털 단일 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EU 기관과 회원국이 수평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일관된 디지털 정책을 추진
 -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기술 등 새롭게 부상하는 기회를 활용하여 활기찬 디지털 생태계를 구현

1)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7 June 2019, Conclusions on the Future of a highly digitised Europe beyond 2020: "Boosting digital and economic competitiveness across the Union and digital cohesion"

2)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15 November 2018, Draft Council conclusions on the strengthening of European content in the digital economy

3) <https://www.eumonitor.eu/9353000/1/j9wik7m1c3gyxp/vkwwg79h32fyd?ctx=vg9pj7ufwbwe&tab=1> 참조

- (정책 분야별 주요 내용) 본 결의안에서 제시한 정책 분야는 ▲유럽의 핵심 디지털 기술 혁신 지원 ▲인공지능의 윤리적 원칙과 가치 존중 ▲유럽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5G 네트워크 통신 발전 ▲디지털 불균형 해소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0년 이후의 EU 디지털 경쟁력 강화 정책(안) >

구분	내용
핵심 디지털 기술 혁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양자정보통신기술, 블록체인기술, 지구관측 서비스 등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핵심 디지털 기술 육성 정책 추진
인공지능의 윤리 원칙과 가치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에 대한 윤리적 지침 제정 •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의료 서비스 개선, 복지 시스템 달성, 식량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문제 등 사회적 과제의 해결을 지원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인프라와 제품, 서비스 및 사용자, 글로벌 경쟁력과 디지털 주권 보호를 위해 EU 전체의 높은 사이버보안 수준을 보장하는 규정을 완전히 실행
5G 네트워크 통신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전역의 5G 네트워크 통신망 및 초고속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확대하고, 시민과 기업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 • 《5G 네트워크 사이버보안 권고안》⁴⁾에 따른 사이버보안 위험 평가 추진
디지털 불균형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사회에서 필요한 신기술 개발 지원 • 디지털 접근성 보장 등 불균형 발생 방지 대책 추진 • 디지털 기술 표준 개발 및 데이터 공유 사업 지원

▶ 시사점

- 이번에 유럽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고도화되는 미래 디지털 경제 법제도 및 정책수립의 기초단계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추진 방향에 합의하고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였다는데에 그 의의가 있음
- 향후 본 결의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및 보완이 있을 예정이나 해당 내용에 따라 미래 정책 방향의 기초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핵심 사항으로 언급된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에 대한 윤리적 지침 제정,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및 디지털 불균형 해소 등과 관련된 법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

4) European Commission, 26 March 2019, Commission Recommendation - Cybersecurity of 5G networks

※ **Reference**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9/06/07/post-2020-digital-policy-council-adopts-conclusions/>

<https://www.consilium.europa.eu/media/39667/st10102-en19.pdf>

영국 인공지능사무국(OAI), 인공지능의 윤리와 안전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구현 가이드 발표 (2019. 6. 10)

영국 인공지능사무국(OAI)¹⁾은 공공부문의 AI 설계 및 구현을 위해 윤리적이고 안전한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인공지능의 윤리와 안전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구현 가이드》²⁾를 발표 (2019. 6. 10.)

▶ 개요 및 경과

- 영국 인공지능사무국(OAI)는 앨런튜링연구소(ATI)³⁾와 협력하여 AI 기술 활용의 윤리적 목표 및 가치의 틀을 설정하고, 안전한 프로젝트 구현을 위한 실행 원칙을 제시하는 《인공지능의 윤리와 안전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구현 가이드》를 발표
 - 본 가이드는 공공부문 AI 관련 프로젝트의 설계·제작·배포에 관련된 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AI 기술 설계·활용의 윤리적 가치(SUM Values)⁴⁾ 체계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안내
 - AI 설계·활용 시 준수해야 할 실행 원칙과 절차 기반의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 제시
- 지난 2018년에 영국 정부는 데이터 서비스 및 프로젝트, 공공 조달된 소프트웨어⁵⁾ 등이 데이터 윤리 원칙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데이터 윤리 프레임 워크》⁶⁾를 발표한 바 있음
 - 이번에 발표한 《인공지능의 윤리와 안전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구현 가이드》는 기존의 《데이터 윤리 프레임 워크》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 활용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보완한 것임

▶ 주요 내용

- (목적) 본 가이드는 윤리적이고 공정하며 안전한 AI 응용 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가치와 원칙을 제공하여 AI 기술 오용 등의 위험을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 Offic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DCMS)내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혁신 구현을 감독하는 부서임.

2) Understanding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and safety-A guide for the responsibl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I systems in the public sector

3) Alan Turing Institute: 영국 정부가 2015년에 설립한 데이터 과학 및 인공지능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독립적인 민간 법인 연구소로 대학, 산업계, 정부 및 재단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음.

4) Support, Underwrite, and Motivate Values: 책임 있는 데이터 설계와 활용 체계를 지원·지지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프레임워크로 본 가이드에서 설정한 용어임.

5) 정부 및 공공기관에 공공조달로 납품된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의미함.

6) Guidance-Data Ethics Framework (2018.8.30.) : 데이터 윤리 기본 원칙은 ▲명확한 사용자 요구와 공공의 이익 고려 ▲ 관련 법률 및 실무 규칙 숙지 ▲ 사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데이터의 사용 ▲데이터의 한계 이해 ▲ 일관성 있는 절차 정립 및 실행 ▲ 작업의 투명성 확보 ▲ 책임감 있는 데이터의 활용 및 유지보수임

해외 입법 동향 영국

- (고려 사항) AI 프로젝트 실행 시 책임 있고 혁신적인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아래의 윤리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함
 - 이해 관계자 및 지역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개인 및 사회집단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려
 - 제품의 안정성·정확성·신뢰성·보안성·견고성을 보장하고, 모델을 설계·구현 시 그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
- (가치 체계와 실행 원칙) AI 기술 설계·활용의 SUM Values 체계와 안전한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AI 기술 설계·활용의 윤리적 가치 체계와 실행 원칙 >

구분		내용
가치 체계	존중	• 개인의 존엄성 회복: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보장, 자율성·자기표현력 등의 권리를 보호
	연결	• 공개적·포괄적 연결: AI 프로젝트 과정의 전 주기에서 다양성과 참여를 활성화, 사회적인 신뢰와 공감, 상호 책임 및 이해의 체계를 강화
	돌봄	• 복지를 위한 돌봄: AI 시스템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복지와 안전을 증진, 해당 기술의 오용과 남용 위험을 최소화
	보호	• 사회적 가치와 공익 보호: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보호, AI 및 디지털 기술을 법에 따라 공정·균등하게 보호
실행 원칙	공평	• 데이터 공정성: 공정한 데이터셋을 사용 • 설계 공정성: 모델에 합리적인 기능, 프로세스 및 분석 구조를 포함 • 산출 공정성: 결과물이 차별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시행 공정성: 편파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제도를 시행
	책임	• 프로젝트의 설계 및 구현의 전 과정에 관련된 모든 역할에 책임을 설정 • 프로젝트 전체 단계에서 검토 및 감독 등의 활동 모니터링 실행
	지속 가능성	• 정확성·신뢰성·보안성·견고성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안정성을 고려 • AI 설계자와 사용자는 AI 시스템이 개인·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인지해야 함
	투명도	• AI 모델이 처리된 방법과 근거 등을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

▶ 시사점

- 영국 정부는 AI 기술이 개인과 공동체, 사회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AI 기술의 윤리 및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제도 및 정책(7)을 추진 중에 있음
-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는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주요 대상이며, 향후 기업 등 민간 부문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Reference

<https://www.gov.uk/guidance/understanding-artificial-intelligence-ethics-and-safety>

https://www.turing.ac.uk/sites/default/files/2019-06/understanding_artificial_intelligence_ethics_and_safety.pdf

7) 실제 사례로 영국 정부는 사이버보안을 위한 지능형 보안 도구를 평가하기 위해 기술의 근간이 되는 AI의 본질을 이해하고, 지능형 솔루션으로 보안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하도록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음.

<https://www.ncsc.gov.uk/collection/intelligent-security-tools>

일본 총무성, 디지털화 정책의 고도화를 위한 ICT 글로벌 전략 공표 (2019. 5. 31.)

일본 총무성은 사회 전체의 디지털화(Society 5.0)¹⁾ 실현과 유엔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²⁾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기본이념을 담은 《ICT 글로벌 전략》³⁾을 발표 (2019. 5. 31.)

▶ 개요 및 경과

- 일본 총무성은 ICT 기술의 세계화를 위해 국가 디지털화 정책(Society 5.0)의 고도화 실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새로운 ICT 정책의 기본이념을 제시하는 《ICT 글로벌 전략》을 발표
 - 국가 디지털화 정책과 글로벌 SDGs를 고려하여, 미래의 글로벌 ICT 전략을 6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
 - 동 전략 중에 특히 IoT 기술 활용에 따른 사이버보안 위험 대응과 글로벌 ICT 기술 관련 규칙·표준 작성은 해외 각국과 협력할 예정
- 동 전략은 간담회⁴⁾ 등을 통해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종합한 것으로 6월 8~9일에 개최된 G20 무역 및 디지털 경제 장관회의⁵⁾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짐

▶ 주요 내용

- **(전략의 기본 이념)** 유엔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에 공헌하고, 국가 전체의 디지털화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여 추진
 -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및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를 구현
- **(주요 내용)** ▲디지털화에 의한 SDGs 달성 ▲데이터 유통 ▲AI와 IoT 활용 ▲사이버보안 ▲ICT 해외진출 ▲개방형 혁신 전략으로 구성되며, 부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일본 정부가 2016년에 발표한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도입된 개념으로, 4차 산업혁명 등 IT 기술의 발전으로 사이버공간과 물리적공간이 융합되는 초스마트 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고령화, 자연재해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패러다임임.

2)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발표된 2030년까지의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총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됨)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위협요인을 동시에 완화해 나가기 위한 공동의 행동과 협력을 제시함.

3) 総務省, 2019.5.31, 「ICTグローバル戦略」

4) 지난 2018년 12월에 디지털 혁명 시대의 ICT 글로벌 전략 간담회를 실시하였음.

5) 본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일본 외무성의 발표한 성명서는 다음 링크를 참조,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487250.pdf>

< 글로벌 ICT 전략 부문별 주요 내용 >

구분	내용
디지털화에 의한 SDGs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이 서로 협력하여 사회전체의 철저한 디지털화를 진행 시키며, ICT 기술을 활용하여 국가 및 글로벌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 - ICT 기반 사회문제 해결 모델 개발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 디지털 격차의 해소 추진 및 관련 인재 육성 -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ICT 인프라 부문 국제 표준 개발
데이터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 활성화 및 정보은행 사회를 실현 - 유통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보안, 지적재산 보호 등 강화 - 정보은행 사회: 데이터 거래 시장의 공정한 경쟁 유도, 디지털 플랫폼 정비
AI와 IoT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기술이 인간에게 보다 좋은 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미래상 구현 - AI 및 IoT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하고, 새로운 고용 및 산업을 창출
사이버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T 기기와 서비스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 및 사이버보안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의 각국과 공동의 협력 증진 - 실무적 대처 능력을 지닌 사이버보안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 - 국제적으로 뛰어난 사이버보안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ICT 해외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ICT 기술과 관련된 규칙·표준 작성 참여 및 지원 추진 - 국가의 신뢰성을 강점으로 활용하여 공공과 민간부문이 서로 협력하여 ICT 기술과 관련된 사례·과제·노하우 등을 공유 - ICT 서비스와 플랫폼 중심의 해외 사업 개발 및 확대 추진
개방형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대의 구체적 미래상 실현을 위한 핵심 ICT 기술 고도화 추진 - 차세대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신체와 언어 능력,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서는 기술 혁신 추진(AI 및 로봇, 뇌 정보통신, 초실감 기술 등) - 안전한 데이터 주도 사회 실현(IoT, 사이버보안, 양자컴퓨터 등)

▶ 시사점

- 일본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ICT 기술 환경 및 디지털 경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국가 전략과는 별도로 새로운 글로벌 ICT 전략을 마련하였음
- 이번에 츠쿠바 시에서 개최된 G20 무역 및 디지털 경제 장관회의에서 동 전략을 기초로 미래의 디지털 무역 체제의 방향성이 논의되었으며, 일본 정부는 관련된 법제도 개선 및 계획의 구체화를 통해 해외 각국과 ICT 부문의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Reference**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623326.pdf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1tsushin06_02000191.html

일본 내각,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2019. 6. 14.)

일본 내각은 5G 네트워크 상용화에 따른 새로운 디지털기술의 혜택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 변경안》¹⁾을 승인 (2019. 6. 14.)

▶ 개요 및 경과

- 일본 내각은 최근 5G 네트워크 상용화에 따라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고려하여 세계 최첨단의 디지털 국가 만들기를 선언하고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제8조제7항²⁾에 근거하여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함
 -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유통망 및 유통규칙 정비 등을 제시
 - 자율주행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약 20만 여개의 신호등을 5G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 기지국으로 활용하는 5G 인프라 구축 계획이 추가됨
- 본 기본계획은 지난 2018년 6월에 기 수립한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³⁾을 전부 개정한 것임

▶ 주요 내용

- **(계획의 목표)** 계획의 목표연도는 2025년으로 자율주행과 원격의료 등의 신산업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주요 목표로 설정
- **(주요 변경 사항)** 국민 생활에서 편익을 실감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 체계의 마련과 사회기반 정비 부문으로 5G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계획이 추가됨
 - 데이터 유통 체계 마련 부문: ▲데이터의 안전·품질 확보를 전제로 한 국제적 데이터 유통 환경 구축 ▲신뢰성 제고 차원의 데이터 유통 규범 정비 ▲개방형 데이터 활용 촉진 등으로 구성
 - 사회기반 정비 부문: ▲5G 인프라 확충 ▲기반 기술 정비 및 공공 조달 ▲인재 육성 및 디지털 격차 해소로 구성

1) 世界最先端デジタル国家創造宣言・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計画の変更について, 2019. 6. 14.

2) 「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法」(平成二十八年法律第百三号) 제8조제7항 정부는 관민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세를 감안하고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시책의 효과 평가를 바탕으로 매년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 계획을 재검토 할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는 변경 내용을 추가한다.

3) 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計画, 2018. 6. 15.

해외 입법 동향 **일본**

○ (변경 부문별 주요 내용) 이번에 추가된 부문에 대한 주요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민 데이터 활용 추진 계획에 추가된 주요 내용 >

구분	내용
데이터 유통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의 안전·품질 확보를 전제로 한 국제적 데이터 유통 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성 있는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DFFT)⁴⁾ 개념을 실현 -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을 촉진하고 해외로의 이전 등에 따른 위험 대응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⁵⁾의 재검토 및 2020년 내 개정안 제출 • 신뢰성 제고 차원의 데이터 유통 규범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유통 정책의 전제가 되는 익명 가공 데이터 등의 분류 체계 정비 - 정보은행⁶⁾ 등 개인 데이터 활용 모델의 정비 등 • 개방형 데이터 활용 촉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개방형 행정정보 발굴 및 민간과 정보제공 실증 실험 실시 - 모빌리티 서비스 활용 확대, 핀테크 산업 및 공유경제 활성화 등
사회기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컬 5G’⁷⁾ 관련 제도를 비롯한 5G 네트워크 통신망의 전국적 보급·정비 - 자율주행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약 20만 여개의 신호등을 5G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 기지국으로 구축·활용⁸⁾ -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뒷받침하는 네트워크 중립성 확보 • 기반 기술 정비 및 공공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클라우드·블록체인 등의 신기술 기반 서비스 활용 강화 - 사이버-물리적 보안 대책 프레임워크, IoT 보안 대책 관련 가이드 등 정비 - 2018년 관계부처가 합의한 「IT조달 방침 및 절차에 대한 합의」⁹⁾의 지속적 이행 • 인재 육성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술과 관련된 인재의 육성, 대국민 교육 및 학습 진흥 - 노인 등에 디지털 활용 지원 강화, 지역의 디지털 및 ICT 커뮤니티 확대 등

4) Data Free Flow With Trust: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유지하면서도, 사이버공간의 신뢰를 양성 및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일본 정부에서는 특히 국제적으로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유통을 가능하게 하자는 개념으로 ICT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5)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平成十五年法律第五十七号, 平成三十年法律第八十号改正)

6) 관광·금융·의료·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 데이터를 본인이 자신의 의사에 근거하여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그 편익을 본인에게 환원하는 것임. 2018년 6월에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정보 신탁 기능의 인정에 관한 지침’에 따라 12월에는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정보은행 인정 취득 설명회를 개최함.

7) 2019년 3월 14일에 총무성에서 발표한 보고서(신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 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로컬 5G’는 지역의 요구나 산업 분야의 개별 요구에 대응하고 다양한 주체가 유연하게 구축 및 이용이 가능한 제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으로 정의함. 로컬5G는 전국을 10km의 격자로 구분하고, 광범위하게 전개할 예정임.

8) 자율 주행의 실현 및 교통 관리 업무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검토·개발하고, 실제 운용에 필요한 기준 책정 등도 검토할 예정임. 동 계획은 선도적인 사회 구현 프로젝트로 별도 구분되어 있으나, 사회기반 정비 부문에 해당하여 5G 인프라 확충의 내용에 포함하였음.

9) 「IT조달에 관련된 국가의 물품 등 역무의 조달 방침 및 조달 절차에 대한 합의(2018. 12. 10.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 및 치안 관계 시스템 등은 공급망 위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조달할 때에는 IT 종합 전략실과 내각 사이버보안센터의 자문을 받아야 함.

▶ 시사점

- 일본 정부가 이번에 변경한 국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은 최근의 ICT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1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실시한 것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유통과 5G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이 주로 추가되었음
- 이에 따라 향후 정부부처 및 지자체가 보유한 데이터의 분류·분석·가공·활용 등 데이터 유통과 관련된 규정이 조기에 개정될 것으로 보이며, 전국 단위의 5G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자율 주행 자동차의 실제 운용에 필요한 기준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

※ Reference

<http://www.kantei.go.jp/jp/singi/it2/kettei/pdf/20190614/siryou1.pdf>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90614/pl1906140024-n1.html>

캐나다 사이버보안센터(CCCS), 사이버보안 교육과정 가이드 초안 발표 및 의견수렴 실시 (2019. 5. 29.)

캐나다 사이버보안센터(CCCS)¹⁾는 사이버보안 교육훈련 과정 및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설계를 지원하고자 《사이버보안 교육과정 가이드》²⁾의 초안을 발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 (2019. 5. 29.)

▶ 개요 및 경과

- 캐나다 사이버보안센터(CCCS)는 교육기관과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역할 기반 접근방식³⁾을 사용하여 사이버보안 분야의 교육훈련 과정 및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교육과정 가이드》의 초안을 발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함
 - 사이버보안 교육훈련 과정의 구성요소를 유형화하고 전문 영역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교육훈련 체계의 틀을 제시
 -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별 지식·기술 역량 및 필요한 교육과정의 기준을 제공
-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는 초안으로 6개월간의 대국민 의견수렴⁴⁾ 후 수정·보완이 완료되면 최종 결과를 센터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임

▶ 주요 내용

- **(대상)** 본 가이드는 사이버보안 분야의 신규 교육훈련 과정과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기존의 타 분야 프로그램에 통합하려는 민간 및 중등교육기관⁵⁾이 주요 적용 대상임
- **(목적)**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전문영역별로 담당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국가 사이버보안 교육훈련의 기본적인 체계와 기준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평가·보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Canadian Centre for Cyber Security: 캐나다 정부가 기존의 사이버보안 조직인 Public Safety Canada, Shared Services Canada 및 Communications Security Establishment를 하나로 통합하여 2019년부터 운영 중인 국가 사이버보안 전담 센터임.

2) Cyber Security Curriculum Guide

3) 학습 요구 사항이 조직의 역할에 기여하는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훈련 체계 설계 접근방식으로, 역할별 요구되는 역량 및 필요한 교육과정의 기준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음.

4) CCCS 내에 사이버보안 교육훈련 전담 조직인 CCCS Learning Hub에서 의견을 취합하여 반영함.

5) 아직 미래의 역할에 대한 학습 및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은 중등교육에서부터 예비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지원하고, 국가의 인재개발을 지원하는 전문 협회 또는 조직에 기본적인 체계를 제공하여 사이버보안 분야의 교육훈련과 목표를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해외 입법 동향 **캐나다**

- **(기본 개념)** 사이버보안의 기본개념 및 교육훈련 시 고려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사이버보안의 범위: 기술 및 비기술적인 사항, 자연재해로부터의 영향까지도 포함한 계획·정책·과정·결정·조치 등으로 광범위하게 정의
 - 학제 개념 도입: 사이버보안은 현실적으로 2개 이상 전문분야가 상호 작용하는 협동·협업 관계임
 - 보편성: 스마트 폰, IoT 시스템 등 우리의 삶에 보편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동적 기술: 사이버보안은 AI, 5G, 클라우드 등 최신 ICT 기술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
- **(역할 기반 교육훈련 체계)** 크게 사업 부문과 기술 부문으로 구분되며, 각 부문별로 아래와 같이 대상과 목표, 핵심 교육과정 주제, 역할을 설정하고 요구되는 필수 역량 및 교육 내용 등⁶⁾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캐나다의 역할 기반 사이버보안 교육훈련 체계(안) >

구분		내용
사업 부문	대상 및 목표	• 정책 결정자와 의사결정자, 조직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지식과 기술 교육에 중점을 둠
	핵심교육 과정주제	• 사이버보안 위협의 개념, 사이버보안을 위한 법적·정책적·윤리적 개념 • 사이버보안 위험 및 사고 관리 • 사이버보안 절차·기술·동향 및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
	역할	• 전략 계획자 또는 사업 감독관 • 사업 분석가, 위험 분석가, 프로젝트 관리자, 재무 분석가 • 정책 분석가 및 개발자, 조달 분석가 및 공급망 관리자, 의사소통 전문가
기술 부문	대상 및 목표	• 사이버보안 기술자가 주요 대상으로 기본적인 IT 지식이 없는 경우 IT 기본 실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전문 기술 분야별 지식과 기술 교육을 실시
	핵심교육 과정주제	• 기술 배경이 제한적이거나 없는 경우 기본적인 IT 실무 지식 제공 • 사이버보안 관련 법적·정책적·윤리적 개념, 보안 관리 접근법 및 프레임워크, 기술·운영 및 관리 제어, 물리적 보안, 사업 연속성 및 재해 복구, 사이버 공격 방법, 취약점 관리, 보안사고 대응 및 완화
	역할	• 관리: 전략 계획자, 보안 정책 분석가, 요구 분석가, 보안 프로그램 관리자, 시스템 인증 전문가, 재난 복구 계획가, 계약·조달 보안 관리자 • 운영·유지보수: 사이버 방어 운영자,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자, 디지털 법의학 분석가, 암호·인증 분석가, 접근관리 분석가 • 평가·측정: 보안 취약성 평가자, 침투 시험가, 보안 시험·평가자 • 설계·구축: IT 보안 분석가, 보안 설계자, 보안 엔지니어, 사이버보안 연구원, SW 보안 분석가 및 개발자

6) 유사 역할, 표준 작업 기능, 업무 목록, 필수 요구 교육, 기술 교육 요구 사항, 운영 및 비 기술적 역량 요구 사항

▶ 시사점

- 캐나다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위원회(ICTC)⁷⁾의 WIL Digital 프로젝트⁸⁾ 등 다양한 기관에서 사이버보안 인재개발 정책을 개발·추진하고 있음
- 캐나다 정부는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인재개발 정책의 추진으로 향후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교육훈련이 국가적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Reference

<https://cyber.gc.ca/en/guidance/cyber-security-curriculum-guide>

<https://cyber.gc.ca/en/guidance/cyber-security-roles-and-specializations>

7)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ouncil: 캐나다의 디지털 경제를 위한 비영리 국가 전문 기술 센터로, 1990년대 초반부터 캐나다 산업부 및 고용부 등 주요 정부부처와 협업 중에 있으며 ICT 관련 인재 개발 및 연구 등의 정책 자문 등을 담당하고 있음.

8) Work-Integrated Learning Digital: 캐나다의 ICT 분야 신규 인재를 개발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국가 프로그램으로, 주요 분야는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핀테크, 빅데이터, 스마트 제조 등을 들 수 있음. 상세 사항은 다음 링크를 참조. <https://www.etalentcanada.ca/work-integrated-learning-program-wil-digital-employers/>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



김창화 한밭대학교 교수

- (現) 한국지식재산학회 총무이사
- (現) 지식재산경상학회 연구이사
- (現) 한국산업보안학회 교육이사
- (現)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법제도포럼 회원

I. 서언

1. 지침 제정의 과정

2015년 5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유럽연합 내에서 디지털 관련 규범을 조화시켜 디지털 경제활동의 제약 요인을 제거하고 유럽연합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도록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발표하였다.¹⁾ EC는 또한 그 해 12월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자유로운 국경 이동에 관한 규칙을 제안하고,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EU 저작권 지침 개정을 포함한 EU 저작권법 현대화를 위한 실천계획인 '현대적인, 보다 유럽적인 저작권 체계를 향하여'를 발표하였다.²⁾ EC는 그 다음해인 2016년에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³⁾을 개정하여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 지침을 작성하였고, 이후 개정들을 거쳐 오다 2019년 3월 26일에 유럽의회가 표결을 진행하여 찬성 348표, 반대 274표로 저작권 지침을 최종 통과시켰으며, 4월 15일 유럽 이사회의 28개 회원국 중 19개국이 그 지침을 승인하였다.⁴⁾ 따라서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 지침이 확정되었으며, 올해 하반기 유럽연합 공보에 공식 발표된 뒤 각 회원국은 자국의 사정에 맞게 입법화 하게 된다.

1) European Commission, 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COM(2015) 192 final (Brussels, 6.5.2015).

2) European Commission, Towards a modern, more European copyright framework, COM(2015) 626 final (Brussels, 9.12.2015).

3)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4) 핀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은 지침 통과에 반대하였으며, 벨기에,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는 입장을 유보하였다.

기고

2. 지침의 구성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은 5개의 장, 7개의 절, 32개의 조문으로, 아래와 같은 조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	대상 및 범위	제17조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보호 콘텐츠의 이용
제2조	정의	제18조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보상 원칙
제3조	연구 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제19조	투명성 의무
제4조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예외 및 제한	제20조	계약 조정 방식
제5조	디지털 및 국경을 넘는 교육활동을 위한 저작물 및 기타 보호대상의 이용	제21조	재판 외 분쟁 해결 방식
제6조	문화유산의 보호	제22조	취소권
제7조	공통 조항	제23조	공통 조항
제8조	문화유산 기관에 의한 절판 저작물 및 기타 보호 대상의 이용	제24조	지침 96/9/EC, 2001/29/EC의 변경
제9조	국경을 넘는 이용	제25조	다른 지침에 따른 예외 및 제한과의 관계
제10조	공개 조치	제26조	시간에 따른 적용
제11조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제27조	경과 규정
제12조	확대된 집중 이용 허락	제28조	개인정보보호
제13조	협상 방식	제29조	자국법화
제14조	시각예술 공유 저작물	제30조	평가
제15조	온라인 이용 관련 언론출판물의 보호	제31조	발효
제16조	보상청구권	제32조	수취인

3. 논란의 중심

본 지침은 2016년 처음으로 입안된 이후 많은 논란들이 제기되어 왔으며, 그 중 링크세(link tax) 규정이라고 불리는 제15조(온라인 이용 관련 언론출판물의 보호)와 업로드 필터 의무화 규정이라고 불리는 제17조(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보호 콘텐츠의 이용)가 그 논란들의 중심에 있어 왔다. 해당 규정들은 모두 온라인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되며, 특히 창작자들의 정당한 보상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가 주를 이룬다. 그런데, 본 규정들은 창작자들의 보상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균형이 지나치게 창작자들에게 기울어져 있고, 기존의 저작권법 원칙을 파괴하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하에서는 각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II. 제15조 온라인 이용 관련 언론출판물의 보호

1. 제정 과정

본 규정에 해당하는 2016년 지침안 제11조는 언론출판사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통한 언론출판물의 이용에 대하여 복제권과 공중이용제공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해당 권리들은 20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하였었다. 여기서의 이용은 뉴스 애그리게이터(aggregator)나 미디어 사업자의 링크 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었고, 그리하여 링크세로도 불렸다. 본 규정의 주 목적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었으나 언론출판사의 이익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하여 2018년 지침안 제11조는 언론출판사에게 '공정하고 비례적인 보상(fair and proportionate remuneration)'을 받도록 하고, 개인 이용자의 사적이며 비상업적인 이용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였으며, 위의 권리들이 5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하였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지침안은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과 관계없이 언제나 보상금 지급의무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사적자치에 반하고, 예외사유의 범위도 지나치게 좁고 추상적이어서 공정한 이용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그리하여 지침 제15조는 언론출판인에게 직접 부여되는 권리에서 공정하고 비례적인 보상을 지급받도록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복제와 전송 등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으로만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예외 조항은 개인 이용자의 사적이용과 비상업적인 이용을 선택적 관계로 구성하고, 하이퍼링크와 언론출판물의 개별 단어들 또는 매우 짧은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의 이용을 포함함으로써 예외 사유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더 나아가 언론출판물의 이용에 대한 권리들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였다.

2. 검토

결국, 지침 제15조는 기존의 지침안에서 예외 사유를 다소 확대하고 있을 뿐, 링크세를 인정하는 등 언론출판사의 권리를 넓게 보호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본 규정에 찬성하는 입장은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뉴스 제공 웹사이트만 뉴스를 이용하여 광고 수익을 얻는 불합리를 막기 위해 본 규정은 타당하다고 한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은 언론출판사가 이용의 승인과 거절을 결정하고 그 이용료를 정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나치게 권한이 강화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

여러 유럽 국가들은 우회 수익세, 구글세, 디지털세 등의 명목으로 뉴스 제공 웹사이트들에게 링크세를 부과하려는 시도를 해오고 있다. 특히, 독일은 2013년 언론출판사에 전송권을 인정하는 저작권법을 개정함으로써 소위 링크세를 도입한 바 있으며, 스페인도 그 다음 해에 링크세를

기고

규정한 개정 저작권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모든 언론출판사들이 구글을 비롯한 온라인 포털 업체에 사용료를 청구하지는 않았으며, 구글이 뉴스들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함에 따라 웹트래픽이 감소하여 언론출판사들이 타격을 입고 구글의 조건에 동의하는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다만, 벨기에는 구글이 언론출판물에 소액광고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하여 협상을 성공하기는 하였으나 강력한 링크세와는 거리가 멀며,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링크세가 언론출판사에게 실제로 수익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에게 뉴스 기사의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불하게 하면서 언론출판사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은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고 자유로운 언론 환경을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2018년 5월 유럽의 169개 대학과 백여 명의 판사들은 언론출판사에게 저작권접권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 정보 및 저작물의 거래비용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창작자들에게 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거짓 정보의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비판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3. 시사점

온라인 이용에서 언론출판물의 보호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이다. 언론출판사들은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 규칙을 제정하여 배포하고, 뉴스를 보기 위해서는 해당 언론출판사들로 가야만 하는 아웃링크 방식의 기사 제공에 대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그 권리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 저작권 지침 제15조는 언론출판사들의 권리 확대 주장에 대한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법과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언론출판사의 권리는 법의 목적인 보호와 이용의 균형 차원에서 적절히 조정되어야 하며, 특히 인터넷에서의 저작물 이용이라는 특성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Ⅲ. 제17조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보호 콘텐츠의 이용

1. 주요 내용

제17조는 이용자에 의해 업로드 된 저작물이나 기타 보호되는 대상을 저장하거나 접근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 의해서 저작물을 공중에게 접근시킨 경우 공중전달 또는 공중이용제공행위를 한 것으로 보며, 이러한 경우 공중전달권과 공중이용제공권을 갖는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기고

책임을 간접책임이 아닌 직접책임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경우 EU 전자상거래지침에서의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책임 제한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되지 않게 된다.⁵⁾ 다만, 제4항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a)제공자가 권리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고, b)권리자가 제공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관계가 있는 특정한 저작물 및 보호 대상이 이용되지 않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c)권리자가 침해를 통보한 저작물 및 보호 대상을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장래 업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b)항에 따라 노력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제5항은 이러한 면책을 판단하는 경우 비례성 원칙의 관점에서 a)서비스 유형, 이용자 수 및 규모,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물 및 보호 대상 콘텐츠의 유형, b)플랫폼 제공자가 조치한 수단이 적절하고 효과적이었으며 이용가능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지출된 비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제6항은 경력이 짧거나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에게 면책요건을 완화하고, 방문자 평균이 5백만을 초과하는 제공자는 침해 통지를 받은 저작물과 보호대상이 다시 업로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8항은 본 규정들이 일반적인 감시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책임의 선을 긋고 있다.

2. 검토

본 규정도 제15조 규정과 유사하게 저작물의 창작자와 권리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간의 수익 불균형이라는 가치의 차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용자가 업로드 하는 대량의 저작물에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 행위가 저작권과 관련되는지와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해왔는데, 본 규정은 이용자의 업로드 행위와 공중에 대한 접근 제공행위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공중전달 또는 공중이용제공행위라고 규정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였다고도 한다.

하지만 본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간접책임으로 인정하고 일정한 경우 면책을 인정해왔던 전자상거래지침의 규정 및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결정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는 저작권의 제한으로 지금까지 인정되어 온 관행을 무시하는 것이고, 리믹스(remix)나 이용자제작콘텐츠(UGC)와 같은 저작물의 변형적 이용에 대한 기준을 더욱 불명확하게 하는 것이어서 온라인에서 창조·공유·통신하는 방식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콘텐츠를 걸러내는 기술인 업로드 필터를

5) EU 전자상거래지침(2000/31/EG) 제14조는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제공자 책임을 면책한다.

기고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검열(censorship)에 해당하게 되며,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필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 비용도 상당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주장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⁶⁾

3. 시사점

본 규정은 저작권자 등에게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규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왔다. 그런데 최근 페이스북의 저커버그는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위험과 잠재 리스크를 정부나 국민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일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은 본 규정에 적합한 사업 모델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있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그에 따른 의무나 부담도 점차 증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본 규정과는 달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간접책임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책임의 범위도 최근에는 권리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삭제·차단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만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그 책임의 범위를 좁히고 있어,⁷⁾ 본 규정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있다.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사이의 이익 균형점을 어디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정할 수 없지만, 그 균형점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따라서 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별도로 개발하여야 하며, 향후 회원국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법제화하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IV. 결어

EU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의 제15조와 제17조는 모두 창작자와 저작권자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며,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갖고 있지 않고 창작자와 저작자를 다수 보유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중요시 여기는 EU가 이러한 규정들을 도입한 것은 이해가 된다. 물론, 지침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전통적인 이론과 공평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에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그 책임도 점차 강화되고 있어, 본 지침의 기준 즉 강화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EU 회원국들의 입법화를 살펴보면서 적절한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등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6) 필터링에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유튜브의 Content ID는 그 개발비에 6천만 달러가 들어갔고, 그나마도 비 침해 이용이 필터링 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7)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 Reference

1. 박희영, "EU DSM 저작권 지침 주요 내용", 저작권 동향 2019년 속보, 2019. 3. 27.
2. 이대희, "EU DSM 저작권지침의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6호, 2019. 4. 18.
3. <https://ec.europa.eu/transparency/regdoc/rep/1/2015/EN/1-2015-626-EN-F1-1.PDF>
4.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01L0029&from=EN>
5.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52015DC0192&from=EN>
6. <http://ipleft.or.kr/?p=6195>
7.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1007>
8. <https://www.zdnet.co.kr/view/?no=20190416083401>

일본의 핀테크 관련 입법동향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 (現) 한국상사법학회 편집이사
- (現)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위원장
- (現) 한국경제법학회 기획이사
- (現)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I. 개요

일본은 핀테크(FinTech)의 성장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부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금융·IT융합에 관한 연구회(「産業・金融・IT融合に関する研究会」)를 운영하였다. 동 연구회는 2016년 3월에 논의의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6년 7월부터 ‘핀테크의 과제와 금후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회의(FinTechの課題と今後の方向性に関する検討会合)’를 개최하였다. 동 검토회의에는 기업경영자와 실무자, 연구기관, 학계, 경제단체, 일본 은행 및 금융청 관계자가 참가하였으며, 핀테크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미 향후 정책적 과제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핀테크의 성장 및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법률로는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法)」의 제정 및 「금융상품거래법(金融商品取引法)」등을 들 수 있다.

II.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1. 입법 취지

핀테크 서비스의 본질은 IT화의 진전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계학습 및 AI등을 이용하여 해석하고, 이를 통해 조합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용자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핀테크에 있어서는 데이터가 안전하게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¹⁾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의 경우 데이터는 개인의 것이라는 기본적 사고방식 하에 ‘데이터 이동권(Date

1) 經濟産業省, 「FinTechビジョン(FinTechの課題と今後の方向性に関する検討会合 報告)」(2017.5.8.), 31頁.

기고

Portability)’을 개인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핀테크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 예를 들어 개인의 금융데이터나 의료데이터 및 운전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유럽처럼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이 명확하게 인정된다면, 개인의 의사에 따라 그 데이터를 쉽게 다른 회사에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데이터에 대한 개인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나 특정 회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특정 개인의 데이터를 그 개인의 의사로 다른 회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은 인터넷 등에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2016년 12월 7일에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12월 9일에 공포·시행되었다. 한편, 일본은 동 법에 따라 개인 등의 데이터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을 2014년에 제정하여 데이터 유통을 위한 사이버시큐리티를 강화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개인 데이터를 익명가공정보로 가공하여 안전한 형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창설하기도 하였다.²⁾

2. 주요 내용

(1) 법의 목적 및 정의

동 법은 인터넷 등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유통되는 다양한 정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의해,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환경의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와 이노베이션의 창출 및 데이터에 기초한 행정·농업·의료·관광·금융·교육 등의 개혁 추진이 이 법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동 법은 ‘관민데이터’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동 법의 ‘관민데이터란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등 타인의 지각에 의해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을 말한다)에 기록된 정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독립행정법인이나 기타 사업자에 의해 그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관리되고, 이용되고 또는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1호). 다만, 국가의 안전을 훼손하거나 공공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경우 또는 공중의 안전보호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데이터는 제외된다.

동 법이 가지고 있는 의의 중의 하나는 AI, IoT 등의 법적정의를 최초로 규정하고

2) 内閣官房情報通信技術(IT)總合戰略室, 「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法について」(平成29年3月) 참조.

기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해 동 법은 '인공적인 방법에 의한 학습, 추론, 판단 등의 지적인 기능의 실현 및 인공적 방법에 의해 실현된 당해 기능의 활용에 관한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제2호). 또한 '사물인터넷(IoT) 기술'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다양한 다수의 사물(thing)을 접속하여 그러한 사물로부터 송신되거나 또는 그러한 사물에 송신되는 대량의 정보 활용에 관한 기술'이라고 정의하였다(제2조제3호). 아울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기술'은 '인터넷 등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자계산기(입출력장치를 포함한다)를 타인의 정보처리 용도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제4호).

(2) 관민데이터 활용추진 계획 등의 작성

본 법은 정부에 대해 관민데이터 활용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민데이터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제1항). 동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① 관민데이터 활용추진에 관한 시책의 기본 방침, ② 국가행정기관에 있어서 관민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지방공공단체 및 사업에 있어서 관민데이터 활용추진에 관한 사항, ④ 관민데이터 활용에 관하여 정부가 중점적으로 구축해야 할 시책 및 ⑤ 그 밖에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제8조제2항).

정부의 관민데이터 활용추진계획은 내각총리대신이 각의 결정을 거쳐 정해야 하며(제8조제5항), 동 계획이 책정되면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인터넷 이용 등의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제8조제6항). 아울러 동 계획에서 정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시책의 구체적인 목표 및 그 달성기간을 정해야 한다(제8조제3항).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별도로 지자체의 관민데이터 활용추진 계획을 정해야 한다(제9조제1항). 동 계획에는 ① 도도부현 구역에 있어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에 관한 시책의 기본적인 방침, ② 도도부현 구역에 있어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도도부현 구역에 있어 관민데이터 활용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9조제2항). 또한 시정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민데이터 활용추진계획을 감안하여 자체적인 관민데이터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9조제3항).

(3)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을 위한 기본시책

본 법에서는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해야 할 기본적 시책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을 위한 기본시책 >

조	구분	내용
제10조	행정절차의 온라인 이용의 원칙화	국가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청, 신고, 처분의 통지 등의 절차에 대해 전자정보처리조직 ³⁾ 을 사용하는 방법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제11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등이 보유하는 관민 데이터의 용이한 이용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등은 자신이 보유하는 관민데이터에 대해서, 개인 및 법인의 권리의익, 국가의 안전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인터넷 등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용이하게 이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제12조	개인의 관여 하에서 다양한 주체에 의한 관민데이터의 적정한 활용	국가는 개인에 대한 관민데이터의 원활한 유통의 촉진을 위해 다양한 주체가 개인에 관한 관민데이터를 해당 개인의 관여하에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제13조	개인번호카드의 보급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의 책정	국가는 개인번호카드 ⁴⁾ 의 보급 및 촉진을 위해 개인번호카드의 보급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의 책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제14조	이용기회 등의 격차 시정	국가는 지리적인 제약, 연령, 신체적인 조건 등의 요인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기회 또는 활용능력의 격차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제15조	정보시스템에 관한 규격 및 호환성의 확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관민데이터 활용을 위해 상호 제휴를 위해 자신의 정보시스템에 관한 규격의 정비 및 호환성의 확보, 업무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4) 관민데이터 활용추진 전략회의

동 법은 관민데이터 활용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 추진전략본부에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전략본부’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 전략본부는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실시하는 주체로서, 관민데이터의 적정하고 효과적인 활용 추진에 관한 시책 중 중요사항에 대한 조사·심의, 시책의 평가 등을 담당한다(제21조).

3) 여기서 말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이란 행정기관 등이 사용하는 전자계산기와 당해 행정기관 등의 절차의 상대방이 사용하는 전자계산기를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제10조).

4) 행정절차에 있어서 특정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개인번호카드를 의미한다(제13조제1항).

Ⅲ. 금융상품거래법 개정

1. 개정의 취지

핀테크의 발전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더욱 많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소위 ‘고빈도 매매(High Frequency Trading, HTF)’로 인한 부작용이다.⁵⁾ 고빈도 매매란 고성능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적으로 주식의 매수·매도 주문이 이뤄지는 알고리즘 매매의 일종으로, 거래량의 급증에 따른 거래비용의 증가 또는 가격형성의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⁶⁾

일본 정부는 고빈도 매매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2017년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여 주식 등의 고속거래행위를 행하는 자(고속거래행위자)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체제정비, 리스크 관리 및 당국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을 부과하였다. 또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 등의 매매를 수탁받는 금융상품거래업자등에 대해 등록된 고속거래행위자 이외의 자와 고속거래행위와 관련된 주식 등의 매매를 수탁받는 것을 금지하였다.

2. 주요 내용

(1) 고속거래행위의 정의

개정 금융상품거래법은 HTF를 ‘고속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41항).

- (i) 아래 ①부터 ③의 행위를 행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거나,
- (ii) 당해 판단에 기초한 매매 등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금융상품거래소등에 대한 전달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당해 전달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①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시장 파생상품 거래
- ② 위의 행위의 위탁, 또는
- ③ 위 ① 및 ②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

5)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고빈도 매매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최근 증권거래세가 인하됨에 따라 고빈도 매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뉴시스 2019.4.9. 기사 참조)

6) 日比 填, “2017年 金融商品取引法改正-高速取引規制について”, 「PwC Legal Japan News」, 1頁.

기고

먼저 (i)의 요건은 거래의 판단이 프로그램, 알고리즘 등에 따라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ii)의 요건은 금융상품거래소등에 주문 등의 정보전달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달시간을 단축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전달시간의 단축에 사용되는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각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내각부령에서는 '콜로케이션(collocation)에서의 발주 등'을 상정하고 있다.⁷⁾

(2) 고속거래행위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

개정 금융상품거래법은 금융상품거래업자등 및 거래소거래허가업자 이외의 자가 '고속거래행위'를 행하는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에게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적격기관투자자등 특례업자와 같이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상품거래업자와 동일한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일 내각총리대신에 등록하지 않고 거래를 한 무등록 고속거래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98조 제3호의3)⁸⁾

(3) 고속거래행위자의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등

고속거래행위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내각총리대신에 ① 상호, 명칭 또는 성명, ② 자본금액(또는 출자총액), ③ 임원의 성명 또는 명칭, ④ 주된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⑤ 고속거래행위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기재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제66조의51).

감독당국은 제출된 등록신청서 등을 심사하여 등록거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중요사항이 누락된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제66조의53). 등록거부요건은 ㉠ 금융상품거래업 등록의 취소처분, 금융상품거래법등의 위반에 의해 벌금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른 사업이 공익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된 자, ㉢ 고속거래행위에 관한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적구성을 갖지 못한 자, ㉣ 고속거래행위에 관한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체제가 정비되었다고 인정받지 못한 자 등이 등록신청을 한 경우를 말한다(제66조의53).

(4) 고속거래행위자에 대한 규제

등록된 고속거래행위자는 그 업무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7) 横山 淳, "高速取引行為 (H F T) 規制", 「大和總研」(2017.6), 5頁.

8) 일본은 법률개정 당시에 '고속거래행위자'로 등록해야 할 대상은 대략 60개사 정도인데 대부분 해외의 회사로 파악하였다. 上掲資料, 4頁.

기고

- ① 업무관리체제의 정비(제66조의55)
- ② 명의대여 금지(제66조의56)
- ③ 다음 상황에 해당하지 않도록 업무운용(제66조의57)
 - 고속거래행위와 관련된 전자정보처리조직 등의 설비에 대한 관리가 충분하지 않아 거래에 지장이 있는 상황
 - 업무의 운용상황이 공익에 반하거나 또는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 ④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의 작성 및 보존(제66조의58)
- ⑤ 사업연도마다 사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제66조의59)

(5) 고속거래행위자에 대한 감독

감독당국은 고속거래행위자에 대한 감독을 위해서 ① 고속거래행위자에 대한 업무개선 명령, 업무정지 명령, 등록취소 등의 처분(제66조의62에서 제66조의64) 및 ② 보고징구, 출입검사 등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제66조의67). 동 권한은 내각총리대신에게 속하는 것이지만, 실무상 금융청장관에게 위임된다.

(6) 금융상품거래업 등에 대한 규제

금융상품거래업자의 경우에는 고속거래행위를 행하는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속거래행위자’로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이미 금융상품거래업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스템 리스크 관리체제의 정비 및 거래기록의 보존 등’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 금융상품거래법은 고속거래행위에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2가지의 규제를 새롭게 부과하고 있다. 우선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이 고속거래행위를 한 경우 신고해야 하며, 또한 고속거래행위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행하는 고속거래행위를 위탁받는 것이 금지된다.

IV. 맺음말

일본은 2015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핀테크의 등장에 따른 사회변화와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지급수단의 변화, 기술의 변화, 금융의 변화 모습을 예측하여 보고, 핀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본인확인방법 등 법률의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개정 작업도 체계적으로

기고

진행하고 있다. 핀테크와 관련된 단일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기존의 법률의 개선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입법적 준비를 통해 핀테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관민데이터 활용추진기본법」은 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금융상품거래법」의 개정과정을 통해 핀테크의 활성화가 항상 긍정적 효과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및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향후 우리 법제의 개선에 있어서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Reference

1. 經濟産業省, "FinTechビジョン (FinTechの課題と今後の方向性に関する検討会合 報告)", 2017.5.8., p31.
2. 横山 淳, "高速取引行為 (HFT) 規制", 「大和總研」, 2017.6, p5.
3. 日比 填, "2017年 金融商品取引法改正-高速取引規制について", 「PwC Legal Japan News」, p1.
4. 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法,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28AC1000000103
5. 金融商品取引法,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3AC0000000025&ppenerCode=1

| 발 행 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Tel. 1544-5118

| 기획·편집 | 법제연구팀

| 발간·배포 | www.kisa.or.kr

- | |
|---|
| <p>※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 내용의 무단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p> |
|---|